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생략)

(신 설)

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

⑤ -----
----- 업무중복도 -----.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기술자문위원회 -----

-----.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종전기준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제·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2014년6월22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